

FDA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시행규칙개정안 발표

1. 배경

□ 대통령의 개정 서명 2년 만에 발표된 식품안전현대화법 시행규칙개정안

- 11년 1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개정안에 서명함. 이로써 식품안전법은 70여년이 넘는 역사 이래 가장 커다란 개혁을 맞이하게 됨. 서명 후 2년이 지나 지난 4일 식품안전현대화법과 관련한 주요 법안을 발표함.

FDA Safety Modernization Act(FDA 식품안전현대화 법안) - 발효 시기: 11년 1월 4일

식품안전현대화법안은 지난 2001년 폭탄 테러 발생 이후에 시행됐던 시설등록제가 강화된 것으로 식품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막는 예방적 효과를 기대하며 개정 되었음. 해당 시설등록제는 인간 또는 동물 소비 대상의 모든 식품(사료 포함) 일체에 관한 제조, 가공, 포장, 저장 업체들이 FDA에 필수적으로 사전 등록할 것을 명시함. (등록기한: 12년 10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FSMA 법안 원문 홈페이지: <http://www.fda.gov/food/foodsafety/fsma/default.htm>

2.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개정

- 모든 식품위생관리규정의 근본인 CGMP가 보다 안전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

1) 개정 제안된 부분

- CFR(연방규정코드)의 Title 21, Part 1, Sub Parts H, I, J 개정
- CFR(연방규정코드) Title 21, Part 110 개정
- CFR(연방규정코드) Title 21, Part 117 신설

2) 제안된 요구 사항

- ① 식품안전계획서 작성: 생산부터 저장 및 판매를 위한 포장 단계까지 전 과정에 대한 계획서 요구
- ② 위해요소 분석: 오염가능성이 있는 모든 위해 요소 분석 요구
- ③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예방 통제: 분석을 통해 파악된 위해요소에 대한 합리적인 예방통제 시스템 요구
- ④ 모니터링: 공정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요구
- ⑤ 시정조치 결과: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 요구
- ⑥ 검증: 제품 테스트, 환경 테스트 및 공급업체 인증 사항 요구
- ⑦ 관련 기록: 생산부터 저장 및 판매를 위한 포장 단계까지 전과정에 대한 기록 요구

□ 소비용 농산물의 성장, 수확, 포장 및 보관에 관한 개정

-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가중 대장균과 특정한 미생물의 위험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

1) 개정 제안된 부분

- CFR(연방규정코드) Title 21, Part 112 신설

2) 제안된 기준

- ① 노동자 교육 및 건강과 위생 기준
- ② 농업용수에 대한 기준
- ③ 생물학적 토양 상태의 기준
- ④ 가축이나 야생동물의 기준
- ⑤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장비, 도구 및 건축물에 대한 기준
- ⑥ 새싹에 대한 기준

“<저작권자 ©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kati.net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